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의안 번호	4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3. 13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사유

2002.12.31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·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(2003. 3. 26부터 시행)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(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)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 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지정 (안 제2조)
- 나. 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지급 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(안 제5조)
- 라.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(안 제6조)

### 3. 관계법령

- 가. 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 (2003.3.26부터 시행)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감업무담당공무원)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(변경 신고포함)업무, 인감증명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3. 3. 26일부터 시행한다.